



광 주 시

수신자 () 귀하 ()
(경유)

제 목 정보 ([] 공개 [V] 부분 공개 [] 비공개) 결정 통지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15874028	접수일	2026. 01. 09.
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1.건축주 의견서(2025.5.27) 2.최종 답변서(2025.12.24)에서 타용도(물품 생산을 위한 작업장, 물류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사무실)이라는 해석의 근거(국토부 지침 및 건축법, 판례 등) 실명 등의 모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정보를 가리시고 전달해주십시오. 지난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적층식 랙의 위법성이 이미 언급되었고, 국토부에서도 조사 중입니다. 이 문서는 다음의 쿠팡 국정조사 및 국토부의 쿠팡 적층식 랙 조사에 제출될 문서입니다. 또한 반복된 민원의 성격이 아닌 귀 지자체의 국토부 지침 및 건축법을 위배한 해석과 소극 행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-------	--

공개 내용	1.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-15874028(2026.01.09.), 곤지암읍-1476(2026.01.14.)호와 관련하여,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 공개결정 하고자 합니다. ※ 제3자의견서 미제출 ☐ 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내용 가. 청구인 : () 나. 청구정보내용 –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416-3번지 시정명령통지건에 대한 의견제출서 – 적층식 랙 관련 국토교통부 지침 다. 부분공개 결정사항 및 통지내용 – 적층식 랙 관련 국토교통부 지침 라. 비공개사유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 5호,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(내부검토 및 민원사항) 마. 수 수 료 : 없음 바. 공개방법 : 전자파일 사. 수령방법 : 정보통신망(정보공개포털)
-------	---

2. 또한,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을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끝.				
공개 일시	2026. 01. 26. 17	공개 장소		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	
공개 방법	☐ 열람·시청 ☐ 사본·출력물 ☒ 전자파일 ☐ 복제·인화물 ☐ 기타			
수령 방법	☐ 직접 방문 ☐ 우편 ☐ 팩스 전송 ☒ 정보통신망 ☐ 전자우편 등			
납부 금액	① 수수료	② 우송료	③ 수수료 감면액	계(①+②-③)
	0원	0원	0원	0원
	납부일	수수료 산정 명세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	
			[]	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			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근거 조항	개인사생활 침해		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비공개 근거 조항 :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 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사유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5 호,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(내부검토 및 민원사항) 비공개내용 :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416-3번지 시정명령통지건에 대한 의견제출 서		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

경기도광주시장

주무관 [REDACTED]

주무관 [REDACTED]

협조자

시행

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건축과

전화번호 031-[REDACTED] 팩스번호 031-[REDACTED] / [REDACTED]@korea.kr

/ 공개 구분

인쇄일자 : 2026. 02. 23. 14:06:41

인쇄자 : [REDACTED]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3/4

유의 사항

-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 등]
 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-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-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-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까지**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